

축산물등급소식

축산물등급제는
생산자에게는 사양지표를!
유통업자에게는 판매지표를!
소비자에게는 구매지표를!

● 비매물 통권 제26호 ● 발행일: '98년 10월 1일 ● 발행처: 축산물등급판정소 ● 주소: 137 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7-7 ● 전화: (02)574-2541 FAX: (02)574-2544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농림부는 고시 제1998-60('98.9.18)호에 의하여 축산물 등급화거래규정을 개정 고시 하였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부류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장에서 발행하는 대급정산서(공급명세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등급판정내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확인증서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축산물가공장의 등급판정확인증서 발급면제로 업무를 간소화하였다.
(거래규정 개정내용 7쪽 참조)

등급제 실시이후 돼지 거세율 크게 증가

지난 '92년 축산물등급제가 시범 실시된 이후 등급판정결과에 의하면 돼지의 거세율이 '93년 5.1%이던 것이 '98.8월 현재 54.6%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거세비율은 지난 '93년에서 '95년까지는 그 증가세가 미미하였으나 '96년 이후 등급제가 본격 실시되고 돼지고기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크게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돼지 거세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급제 실시 초기에는 암돼지의 등급판정두수가 많았으나 거세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면서 거세가 활성화된 '96년 이후에는 수돼지와 거세돈의 판정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돼지의 거세율) (단위: 천두, %)

년도	암돼지	수 돼 지			비율(A/B)
		비거세	거세(A)	계(B)	
'93	998	768	41	810	5.1
'94	1,445	1,231	85	1,316	6.5
'95	2,580	2,177	241	2,419	10.0
'96	3,151	2,466	499	2,966	16.8
'97	3,674	2,664	1,208	3,872	31.2
'98	2,889	1,467	1,766	3,233	54.6

※ '98년은 1~8월 누계임.

등급판정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본소는 등급판정결과를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의 육류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인터넷에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에는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등급판정업무 소개, 오늘의 시세, 월별 등급판정 및 경락가격 등의 통계자료, 소비자에게 유익한 육류관련정보 등이 실려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apgs.co.kr"이다.

돼지등급기준 개정이후 등급판정결과

돼지도체등급 기준이 개정 시행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본소에서 실시한 전국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에 의하면 A등급의 출현율이 개정전('98.1-8월) 23.4%이던 것이 개정후에는 23.3%로 개정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은 개정후가 32.4%로 개정전 31.6%보다 0.8%높았으며, C, D등급은 개정전보다 각각 0.1%, 0.9%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판정결과로 보았을때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 이후 상위등급 출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출현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이미 등급기준 개정에 맞추어 규격돈을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의 소매단계 구분판매제도에 관한 리플릿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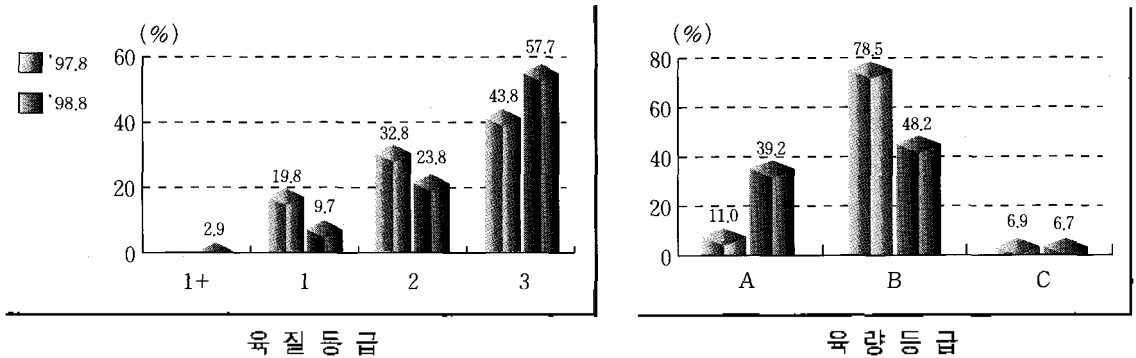
본소에서는 지난 7월 개정고시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홍보를 위해 리플릿 7만부를 제작하여 유통업자, 축산기업조합, 유관기관 및 단체등에 배부하여 식육의 판매 및 구입요령을 알려 줌으로써 식육의 구분판매제도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도체 등급판정결과('98년 8월)

'98년 8월의 등급판정두수는 130,291두였으며, 그중 한우는 103,213두(79.2%)였다. 한우도체의 육질 1+등급 출현율은 2.9%, 1등급 출현율은 9.7%, 2등급은 23.8%, 3등급은 57.7%로써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년동기보다 7.2% 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육량 A등급은 39.2%, B등급은 48.2%, C등급은 6.7%가 출현되어 전년동기보다 A등급 출현율이 28.2% 포인트 증가하였다.(등급기준이 개정되어 '97. 12. 1부터 1+등급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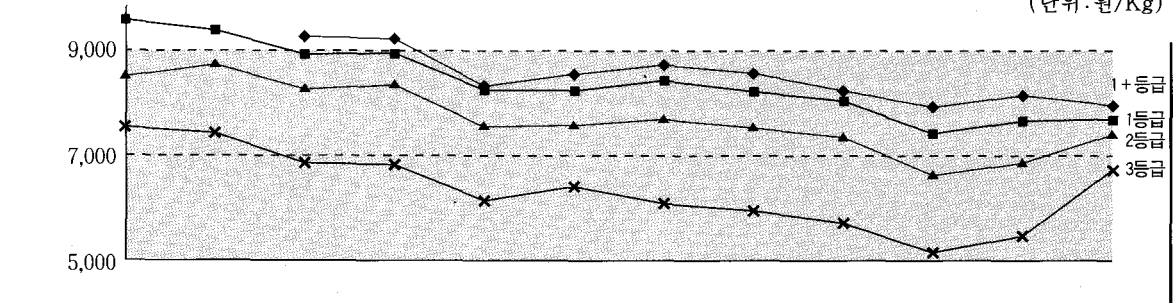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의 한우도체 '98. 8월 평균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445원이 증가한 6,498원이었고 육질 1+등급 평균가격(B등급기준)은 8,208원, 1등급은 7,801원, 2등급은 6,993원, 3등급은 5,760원으로서 전월대비하여 1+등급은 274원, 1등급은 382원, 2등급은 371원, 3등급은 602원 상승하였다.

1. 한우 등급별 출현율(전국)



2. 한우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서울공판장)

(단위: 원/Kg)



등급	'97. 10	11월	12월	'98.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9,276	9,216	8,314	8,552	8,721	8,592	8,230	7,934	8,208	7,976
1	9,601	9,398	8,915	8,935	8,268	8,259	8,431	8,218	8,058	7,419	7,801	7,715
2	8,498	8,719	8,267	8,338	7,535	7,597	7,703	7,537	7,357	6,622	6,993	7,392
3	7,461	7,334	6,770	6,746	6,050	6,318	6,072	5,940	5,707	5,158	5,760	6,715
등 외	5,514	5,316	4,509	5,169	4,291	4,809	3,943	3,929	3,551	3,504	4,228	4,950
평균	8,083	7,997	7,675	7,706	6,787	7,111	7,019	6,861	6,686	6,053	6,498	7,164

주) 1. B등급 기준임. 2. '98년 9월은 20일까지의 평균임

3. 도매시장별 한우 경락가격('98년 8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별	등급별 경락 가격													
		평균	A1+	A1	A2	A3	B1+	B1	B2	B3	C1+	C1	C2	C3	등외
서울축공 (서울)	암	6,419	8,292	7,804	6,939	5,994	7,952	7,454	6,782	5,755	6,928	6,583	6,394	5,471	4,318
	수	5,987	8,664	8,385	7,379	5,855	8,571	7,936	7,237	5,731	-	7,094	6,269	4,727	3,145
	거세	7,477	8,505	8,207	7,313	6,082	8,326	8,031	7,206	5,865	7,095	6,838	6,233	5,500	-
태강산업 (서울)	암	5,201	-	-	-	-	7,300	5,777	5,918	5,369	-	5,190	5,241	4,329	3,875
	수	5,861	-	8,198	6,775	5,762	-	7,163	6,648	5,304	-	-	-	4,400	2,509
	거세	7,162	7,430	7,826	6,668	5,787	7,946	7,934	6,871	6,152	-	-	5,200	-	3,600
동원산업 (부산)	암	6,376	7,744	7,317	6,543	5,850	7,422	7,042	6,355	5,640	6,750	6,086	5,868	4,963	3,618
	수	5,139	-	-	5,250	4,800	-	-	-	5,330	-	-	-	5,175	-
	거세	7,200	-	-	-	-	-	7,200	-	-	-	-	-	-	-
태강산업 (김해)	암	6,244	8,280	7,137	6,598	5,485	7,898	7,083	6,516	5,425	6,628	6,241	5,621	4,568	3,220
	수	5,478	-	-	5,700	5,511	-	5,400	5,200	5,370	-	-	-	-	-
	거세	-	-	-	-	-	-	-	-	-	-	-	-	-	-
신흥산업 (대구)	암	5,000	-	-	-	-	-	-	-	5,000	-	-	-	-	-
	수	6,030	9,100	7,833	7,333	5,824	-	8,039	7,057	5,411	-	-	-	-	-
	거세	7,346	8,027	7,672	7,322	6,000	7,542	7,196	7,081	5,508	-	-	-	-	-
삼성식품 (인천)	암	5,759	-	-	-	-	7,025	6,994	6,252	5,466	6,897	5,400	5,971	4,584	3,541
	수	4,922	7,219	-	5,418	4,965	-	-	6,167	4,923	-	-	-	3,789	2,109
	거세	6,582	-	6,841	5,911	-	-	5,999	7,079	-	-	-	-	-	-
대양식품 (대전)	암	6,850	8,346	7,902	7,046	5,638	8,202	7,652	6,917	5,708	6,984	6,678	6,147	5,227	4,260
	수	6,190	-	8,408	7,377	5,876	8,510	7,938	7,293	5,820	-	-	-	-	4,900
	거세	7,575	8,630	8,542	7,850	6,210	8,363	8,048	7,430	5,830	7,100	6,882	-	-	-
축협고령 (고령)	암	5,007	-	-	-	-	-	-	6,000	4,989	-	-	-	-	4,050
	수	6,021	-	8,140	7,319	5,869	-	7,773	7,145	5,858	-	6,500	6,153	5,110	-
	거세	7,069	8,371	8,279	7,292	6,306	8,103	7,846	7,055	5,990	7,145	6,720	6,140	5,580	-
제주축공 (제주)	암	4,951	8,160	-	-	-	7,346	6,910	6,115	4,936	6,390	-	-	-	1,495
	수	6,660	8,500	7,880	7,389	6,223	6,820	7,200	6,580	5,100	-	-	-	-	-
	거세	6,783	-	-	-	6,255	-	7,840	-	-	-	-	-	-	-

주) 1. 평균 경락가격은 등급별 출현빈도가 고려되었음.
(김해태강, 대구신흥산업은 부산군이 포함된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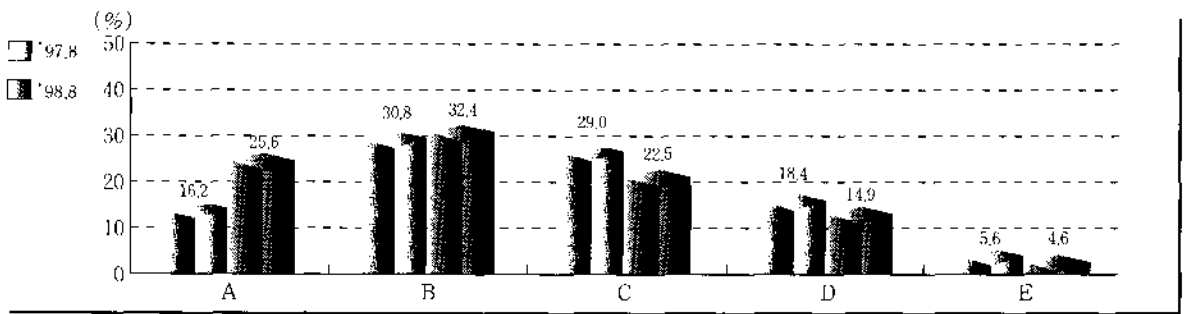
2. 태강(서울) 거세 A1+등급 3두, A1등급 5두 출현하였음.
3. 삼성식품 거세 B1등급 1두, B2등급 2두 출현하였음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98년 8월)

'98년 8월의 등급판정두수는 782,775두로 이중 A등급은 25.6%, B등급은 32.4%, C등급은 22.5%, D등급은 14.9%, E등급은 4.6%의 출현율을 보였으며, 상위등급(A,B등급) 출현율이 전년동기 대비 A등급은 9.4%포인트 증가, B등급은 1.6%포인트 감소하였다.(등급기준이 '97. 8. 1 개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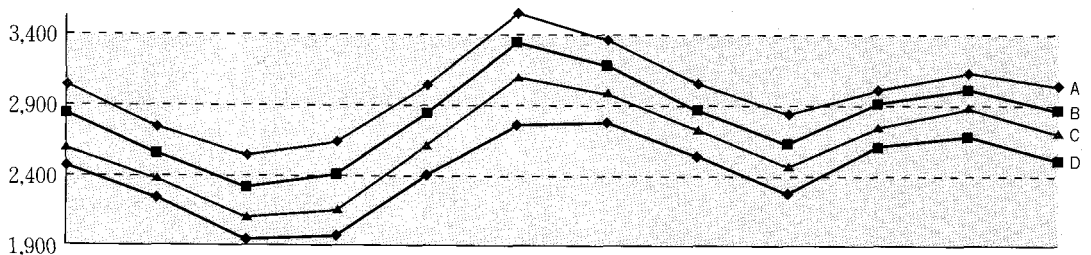
축협서울공판장의 돼지도체 평균경락가격(원/kg)은 전월대비 127원 하락한 2,550원이었고, 암돼지의 A등급 출현율은 21.9%, B등급은 16.6%, C등급은 7.4%, D등급은 4.9%, E등급은 12.9%이었으며 암돼지 A등급 경락가격은 3,038원, B등급은 2,871원, C등급은 2,707원, D등급은 2,512원, E등급은 1,425원으로 등급간(A-D)에 164~195원의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1. 등급별 출현율(전국)



2. 등급별 경락가격 추이(암돼지, 서울공판장)

(단위: 원/Kg)



등급	'97.9	10월	11월	12월	'98.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A	3,050	2,764	2,552	2,640	3,055	3,575	3,377	3,061	2,832	3,066	3,136	3,038
B	2,840	2,568	2,323	2,403	2,847	3,360	3,189	2,877	2,634	2,907	3,008	2,871
C	2,606	2,395	2,109	2,169	2,614	3,096	2,990	2,725	2,474	2,761	2,881	2,707
D	2,494	2,251	1,947	1,973	2,401	2,772	2,792	2,541	2,289	2,613	2,694	2,512
E	1,496	1,481	1,271	979	1,365	1,708	1,783	1,673	1,416	1,429	1,434	1,425
평균	2,651	2,418	2,184	2,176	2,556	2,965	2,934	2,679	2,424	2,635	2,687	2,589

3. 도매시장별 돼지 경락가격('98년 8월)

(단위 : 원/kg)

도매시장	성 별	등 급 별 경 락 가 격					
		평 균	A	B	C	D	E
서울축공 (서울)	암	2,589	3,038	2,871	2,707	2,512	1,425
	수	2,364	—	2,658	2,467	2,272	1,296
	거세	2,605	2,739	2,639	2,522	2,325	1,610
태강산업 (서울)	암	2,729	3,021	2,868	2,755	2,703	1,490
	수	2,381	—	2,686	2,529	2,280	1,391
	거세	2,651	2,736	2,660	2,570	2,479	1,793
동원산업 (부산)	암	2,621	3,197	3,054	2,843	2,556	1,367
	수	2,447	—	2,740	2,665	2,413	1,199
	거세	2,659	2,783	2,721	2,581	2,437	1,875
태강산업 (김해)	암	2,366	3,054	2,928	2,756	2,405	1,411
	수	2,325	—	2,701	2,632	2,259	1,127
	거세	2,681	2,753	2,721	2,624	2,446	1,527
신흥산업 (대구)	암	2,315	3,091	2,958	2,842	2,572	1,339
	수	2,558	—	2,762	2,733	2,585	1,120
	거세	2,707	2,811	2,746	2,638	2,397	—
삼성식품 (인천)	암	2,771	3,061	2,919	2,764	2,642	1,524
	수	2,455	—	2,719	2,840	2,447	1,528
	거세	2,566	2,757	2,658	2,519	2,390	2,123
삼호축산 (광주)	암	2,632	3,084	2,979	2,817	2,545	1,315
	수	2,367	—	2,701	2,573	2,316	1,434
	거세	2,659	2,803	2,708	2,552	2,353	1,819
대양식품 (대전)	암	2,954	3,072	2,998	2,908	2,792	1,441
	수	2,438	—	2,540	2,540	2,438	1,198
	거세	2,567	2,649	2,631	2,504	2,365	2,514
축협고령 (고령)	암	2,208	3,100	2,963	2,760	2,453	1,272
	수	2,338	—	2,766	2,661	2,386	935
	거세	2,783	2,870	2,790	2,680	2,320	—
제주축공 (제주)	암	2,708	2,861	2,768	2,558	2,313	1,800
	수	2,323	—	2,441	2,356	2,170	2,190
	거세	2,444	2,641	2,533	2,403	2,233	1,160

주) 1. 돼지 경락가격은 방피도체 경락가격 기준임.

2. 제주축공 경락가격은 팜팜도체 경락가격임.

도체등급제와 소(牛)출하방법의 결정

오랜동안 정성들여 키운 소를 어떤 형태로 출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것인가 하는 출하방법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출하대상우의 체중과 비육도를 감안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도체의 상태와 시장여건에 따를 것인지 또는 우상인이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것인지, 대형 유통업체 또는 단골 거래 정육점에 출하할 것인지 소득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출하해야 한다.

또한, 최근 축협을 비롯하여 고급육생산 농가가 직접 판매장을 개설하고 지역특성 등을 살려서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여 전문판매점에 출하함으로써 자기제품의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이윤을 농가소득화하여 안정적인 비육경영을 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한우의 성별 등급별 경락가격 대비 산지가격 차이('98년 7월))

성 별	암 소			수 소			거 세 우		
	경락가격	경락-산지	두 수	경락가격	경락-산지	두 수	경락가격	경락-산지	두 수
A1*	2,329	722	4				2,418	737	111
A1	2,110	503	13	2,177	496	12	2,292	611	240
A2	1,793	186	52	2,036	355	118	2,102	421	370
A3	1,521	-86	64	1,501	-180	1,692	1,620	-61	187
B1*	2,216	609	40	2,465	784	1	2,322	641	147
B1	2,059	452	191	1,966	285	4	2,195	514	415
B2	1,758	151	470	2,062	381	66	2,051	370	474
B3	1,484	-123	592	1,462	-219	316	1,582	-99	201
C1*	1,902	295	6				1,922	241	22
C1	1,773	166	24				1,840	159	66
C2	1,684	77	76	1,592	-89	3	1,654	-27	66
C3	1,398	-209	89	1,438	-243	3	1,450	-231	14
등 외	1,003	-604	107	779	-902	18			
평 균	1,639	32	1,728	1,540	-141	2,233	2,049	368	2,313
산지(%)	1,607		(50.6)	1,681		(15.5)	1,681		(79.9)

- * 경락가격은 두당 천원(500kg기준)임
- * 경락-산지는 경락가격에서 산지가격 차이이며, 진한 글자는 산지가격보다 경락가격이 높은 금액임(단위는 천원)
- * 산지란은 산지가격으로 단위(500kg 기준)는 천원이며, ()내의 숫자는 산지가격보다 경락가격이 높은 출하두수의 비율임
- * 산지소값이 가장 낮은 '98년 7월에 등급받은 소 중 거세우는 경락평균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높으며, 다음에 암소이나, 수소는 오히려 산지가격이 높았음.

현저 가축시장 또는 직접 농가에 출하하는 우상인에게 파는 경우에는 생체가격으로 거래되나, 축산물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에 출하하면 경매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세우와 비육이 잘되어 도체율이 높고 비육상태가 우수하여 육질등급을 잘 받아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소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출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을 비교해 보고, 출하소의 비육상태를 잘 검토하여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출하한다.

최근에 소값이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서 '98년 7월분 기준으로 축협 서울공판장의 한우의 도체등급 결과에 따라 등급별 가격결정 내역을 보면, A1*, B1*, A1, B1, A2, B2, C1*, C1, C2, A3, B3, C3등 순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소의 경우 적어도 2등급(A,B)이상의 상위등급을 받았을 경우, 가축시장의 산지 평균 가격보다도 소득면에서 두당 28만원 내지는 7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소의 경우 두당 15만원에서 부터 72만원을, 거세우의 경우에는 37만원에서 74만원까지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소값이 떨어질수록 등급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암소의 경우 2등급(C)까지도 약 7만원에서 29만원 가격차가 있고, 거세우의 경우도 1등급(C)까지 16만원에서 24만원의 가격차가 생겨서, 이는 결국 고급육 생산농가가 자기가 출하한 소에 대하여 등급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생산에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또한 암소의 평균 경락가격이 산지가격보다 32천원이 높고 산지가격보다 경락가격이 높은 두수의 출현율도 50.6%로 나타났으나, 수소의 경우에는 평균 경락가격이 산지가격 보다도 151천원이 낮고 경락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높은 두수의 출현율도 15.5%로 낮아 수소 사육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거세우의 경우는 평균 경락가격이 산지가격보다 368천원이 많고, 지난 상반기('98. 1~6) 평균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락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높은 두수의 출현율도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소값이 어릴수록 소사육을 잘하여 등급을 잘 받으면 산지가격보다도 등급별 경매가격이 유리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전문)

농림부 고시 제1998-60호

농림부 고시 1998-28호('98. 6. 1)의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

1998년 9월 18일

농림부장관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화 거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과 정육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거래지역 및 종류·형태등) 축산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등급화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등급판정확인서 발급) 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교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부류도매시장·축산물공판장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장에서 발행하는 대금정산서(공급명세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등급판정할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본다.

③ 축산물을 등급화거래지역으로 운반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반입업소에서는 이를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판정사 배치) ① 제3조 규정에서 등급화거래지역내에 소재한 도축장 경영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등급판정사 배치를 요청하고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제3조 규정에서 등급화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도축장의 경영자가 신규로 등급판정사 배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고 시·도지사를 동 도축장의 등급판정계획과 시설 등이 등급판정시행에 적합하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도축장경영자등의 준수사항) ①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한 협조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일 도축두수 및 반출두수를 축산물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되어야 한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온도체 상태에서 등급판정(이하 “당일 등급판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도살한후 3시간 정도 경과한 후 냉장실에 1시간 보관하고 마지막 흉추와 제1요추 사이를 평면으로 고르게 절개한 후 드라이아이스(Dry Ice)를 처리하여 5분이상 냉각한 상태에서 등급판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④ 등급화거래지역에서 소·돼지의 도체를 운반·보관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발골·정형이전까지는 등급판정인을 훼손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지도·단속등 행정조치사항) ① 시·도지사는 등급화거래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등급화거래지역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구매하거나 운반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할 소도체에 대하여는 검사원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규정에 의거 냉장후 출고시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일등급판정을 받거나 동의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1994-63호('94.11.22)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축산물등급소식지 7월호 참조)

등급판정을 받으면 농가소득이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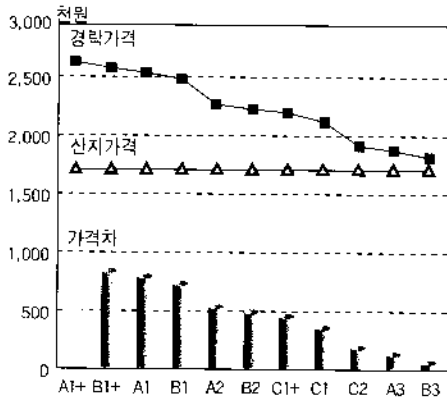
축산물등급제는
고급육생산을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줍니다.

축산물등급제 실시 이후
한우 고급육(1, 1+등급) 출현율이 10.7%에서 18.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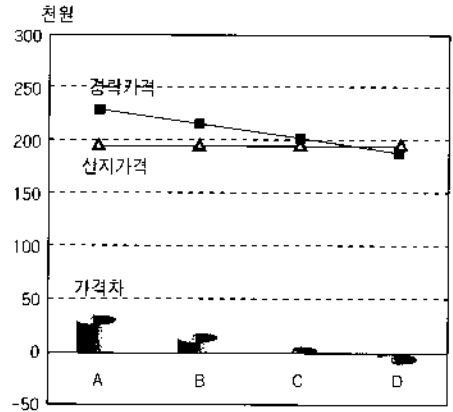
돼지 A등급 출현율은 5.6%에서 25.1%로,
B등급 출현율은 30.8%에서 32.4%로 높아졌습니다.

산지가격 하락시에도 등급판정을 받으면
한우 2등급 이상은 2~94만원을,
돼지 C등급 이상은 5~39천원을 더 받습니다.

▣ 등급판정 받은 소와 산지가격의 차이
(550kg 기준 거세한우, '98년 8월 축협서울공판장)



▣ 등급판정 받은 돼지와 산지가격의 차이
(110kg 기준 암돼지, '98년 8월 축협서울공판장)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7 Tel. (02)574-2541 Fax: (02)574-2544